

# 재난관리자원 분류 기준의 변화



**옥영석**  
(사)방재관리연구센터  
선임연구원  
oys@kodipa.or.kr



**정민수**  
(사)방재관리연구센터  
책임연구원  
jminsoo03@kodipa.or.kr

## 1. 개요

재난관리자원은 사전 대비계획이 수립되면 실제 재난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각 지자체별 적정 보유 방재자원 조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전문운영기관에 의한 EMAC (Emergency Management Assistance Compact)을 통해 각 지역에서 분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난현장에 투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시스템의 특징은 재난발생에 따른 행정적, 조직적인 구성을 갖고 팀의 역할 분담을 통해 맞춤형 재난 자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시스템을 위해 우리나라의 행정조직에 맞는 법과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 2. 국내재난자원 관리 현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종전의 재난관리 관련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정의되어 있는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의 개념에 국무조정실에서 요구한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등 사회적 재난을 포함하여 확대 일원화된 「재난」 개념이 정립되었다. 이후에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에서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사회재난으로 분류되어 있던 재난의 분류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이원화된 분류체계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경을 통해 사회재난은 인간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성 재난에서부터 국가기반체계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국가운영체계 및 국민생활이 마비되는 등의 대규모 사회적 피해까지도 포함하는 등 사회재난의 범위가 넓고 다양한 범주를 포함하고 있다.

근래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 메르스 전염병 확산 피해사건, 각종 대형 화학재난 및 근자에 유럽 각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테러 사건 등은 재난의 다양한 발생 범주에 대한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평시에 광의적인 의미의 사회재난 발생에 대한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 마련 등도 필요하지만 재난 발생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본적인 대응체계 수립이 중요 선결과제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은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을 목표로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여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자원관리 범위 선정, 산하기관, 민간단체 자원정보시스템, 재난관리자원 포털 구축을 핵심과제로 하여 현재 2단계 사업까지 이루어졌으며 3단계 사업이 시행 준비 중에 있다.

### 3. 「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시스템 이용을 위한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의 세부기능과 관련한 주요 메뉴 중 하나인 자원관리 부분의 입력되는 자원과 연관되는 「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시스템 이용을 위한 규정」(2016.5.11 국민안전처 고시 제 2016-50호)이 최근 개정 및 고시되었다. 금번 개정은 자재, 장비, 인력에 대한 서로 다른 중분류 기준을 협업 기능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난관리자원의 재분류(별표)
  - 공동활용자원과 개별활용자원의 각 중분류, 소분류 자원 수정
- 자재, 장비, 인력의 중분류 기준을 협업기능으로 통일하고, 구조구급, 의료방역, 긴급생활안정지원 등 중분류 기준을 명시(제4조)
  - 제4조의 개정된 신·구조문 대비표는 아래와 같다.

기 준	개 정
제4조(자원의 분류) ② 대분류는 자재, 장비, 인력 3개 분야로 대별하고, <u>자재는 재난유형, 장비는 기능, 인력은 작업유형과 팀 또는 개인단위로 중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u> 1. “자재”는 재난발생시 <u>응급조치 및 복구에 동원이 가능하도록 재난활동에 활용되는 기본적인 재료들을</u> 말하며, <u>재난 발생시 응급조치 및 복구에 동원이 가능하도록 풍수해, 제설, 가뭄, 화재방, 환경오염, 화재, 의료방역, 재난구호, 기타 재난으로 관리한다.</u>	제4조(자원의 분류) ② 대분류는 자재, 장비, 인력 3개 분야로 대별하고, <u>자재, 장비, 인력은 협업기능으로 중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u> 1. “자재” 및 “장비”는 재난발생시 <u>대응 및 복구에 응원이 가능하도록 재난활동에 활용되는 자원을</u> 말하며, <u>구조구급, 의료방역, 긴급생활안정지원, 에너지기능복구, 시설응급복구, 긴급통신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교통대책, 사회질서유지, 자원봉사, 기타 기능으로 구분 관리한다.</u> 2. 삭제

<p>2. “장비”는 재난발생으로 인해 긴급 및 응급조치, 복구활동에 동원이 가능하도록 사용되는 장비로서, 사용 목적에 따라 구조·구급, 의료방역, 재난구호, 복구, 재난현장 환경정비 및 기타 기능으로 관리한다.</p> <p>3. “인력”은 재난발생 시에 대비하여 대응 및 복구활동에 응원 및 동원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기관으로부터 특수한 자격과 인증을 받았거나 전문적인 기술과 기능을 보유한 인적 자원을 말한다.</p> <p>③ 자재·장비는 주요 자재 및 장비를 중분류에 근거하여 선정하고, 자원의 공동활용과 개별활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인력은 재난유형에 따라 작업유형과 팀으로 분류하고, 재난발생 시 각 재난유형에 따라 구조·구급, 의료방역, 재난구호, 복구, 사회질서·유지, 재난현장 환경정비, 재난수습, 자원봉사, 정보통신으로 분류하며 각 재난에 맞는 작업유형과 특화된 팀 또는 개인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2. “인력”은 재난발생 시 대응 및 복구활동에 응원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기관으로부터 특수한 자격과 인증을 받았거나 전문적인 기술과 기능을 보유한 인적 자원을 말한다. 협업기능에 따라 작업유형과 팀으로 분류하고, 협업기능은 구조구급, 의료방역, 긴급생활안정지원, 에너지 기능복구, 시설응급복구, 긴급통신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교통대책, 사회질서유지, 자원봉사 및 기타 기능으로 분류하며 각 기능에 맞는 작업유형과 팀 또는 개인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③ 자재·장비는 공동활용과 개별활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인력은 공동활용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	--

- 재난관리자원 명칭은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및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품명 및 세부품명을 사용(제7조)
  - 제7조의 개정된 신·구조문 대비표는 아래와 같다.

기 존	개 정
제7조(관리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 ①~② 생략 ③ 신설	제7조(관리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재난관리자원의 명칭은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및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품명 및 세부품명을 사용한다.

- 매월13일을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지원기관 및 이용기관의 장은 재난관리 자원의 변동사항을 매월 20일까지 제출(제10조)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관리자원 자재, 장비, 인력에 대한 중분류 기준의 변화는 기존에 자재는 재난유형별, 장비는 사용기능별, 인력은 재난유형별로 그 기준이 달리 적용되어 있었다. 또한 자재와 인력의 경우 재난유형별로 구분되어 있는 반면에 그 세부 내용은 상이하였다. 따라서 개정에서는 기능별 분류에 따른 13개 협업기능 중에서 재난관리 자원지원, 상황관리 총괄, 재난수습홍보 항목을 제외한 10개의 분류와 기타 등 총 11개 협업기능별 분류에 따라 자원에 대한 중분류 기준을

마련하였다.

표 1. 재난관리원 자재·장비·인력 중분류 비교

13개 협업기능	현행			개정
	자재	장비	인력	자재, 장비, 인력 구분 통일
기능별 분류	재난유형별	사용기능별	재난유형별	협업기능별 분류
수색, 구조·구급		구조·구급	구조·구급	구조구급
의료 및 방역서비스	의료방역	의료방역	의료방역	의료방역
	화생방			
긴급생활 안정지원	재난구호	재난구호	재난구호	긴급생활 안정지원
			재난수습	
에너지기능복구		복구	복구	<del>에너지기능복구</del>
시설응급복구	풍수해			시설응급복구
긴급통신지원			정보통신	긴급통신지원
사회질서유지			사회질서유지	사회질서유지
재난현장 환경정비	환경오염	재난현장 환경정비	재난현장 환경정비	재난현장 환경정비
자원봉사관리			자원봉사	자원봉사
교통대책	제설			교통대책
재난관리 자원지원	화재	기타		기타
	가뭄			
	기타			
상황관리 총괄				-
재난수습홍보				-

현재 재난관리자원 분류 기준에 따라 수립된 재난관리자원 현황을 살펴보면 공동활용 자원과 개별활용 자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공동활용의 경우 자재는 28종 [세부품명 41종], 장비는 99종 [세부품명 109종], 인력은 26개 유형에 대해 21개팀(중복제외)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개별활용의 경우 자재는 4종(세부품명 5종), 장비는 11종(세부품명 13종)으로 구분되어 있다.